

군무원 가산점

가. 취업지원 대상자

- (1) 적용대상 :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으로서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
- (2) 가점비율 :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의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점수
- (3) 적용범위 : 6급~9급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 직위에 한함.
- (4) 선발범위 : '취업지원대상 가점'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직위별 선발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.

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.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

나.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·면허증 소지자

- (1) 응시 가산 자격증 해당직렬(응시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부여)

* 응시 가산 대상 자격증·면허증 세부내역은 <붙임> 참조

- (2) 가산점은 6급~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에 한해 적용함

※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(11개) 응시자에게는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

(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) : 사서, 환경, 전산, 항해, 약무, 병리, 방사선, 치무, 재활치료, 의무기록, 영양관리

- (3) 가산비율 : 과목별 만점의 3% 또는 5%

7급		9급	
기술사, 기능장, 기사	산업기사	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	기능사
5%	3%	5%	3%

다. 유의사항

- (1)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,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 응시/가산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할 경우 가(산)점 부여
 - 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가산 자격증·면허증의 가산점은 각각 적용함.
- (2) 가(산)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기간 또는 자격증·면허증 수정입력 기간에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(<http://recruit.mnd.go.kr>)를 접속하여 취업지원대상 가점비율, 가산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등을 입력하여야 함.
- (3)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
- (4)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과 가산 자격증·면허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.

<붙임>

군무원 가산 자격증(보건/식품 분야)

직렬	기술사	기사	산업기사
방사선직	방사선 취급감독자	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	방사선사
병리직	-	-	임상병리사
약무직	약사	-	-
영양관리직	식품	식품	영양사, 식품

※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및 가산 자격증으로 인정한다.

※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별표 5를 적용하되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, 응시 및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.

- 5급 및 7급 : 기사 이상, 9급 : 산업기사 이상

- 단,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